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 
2020. 12. 7.(월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**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2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금천구  
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성액 ㉠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㉢=㉡-㉠
		수입㉢	지출㉣		
자 활 기 금	794,246	138,000	182,000	750,246	△44,000

## 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기금 개요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 3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임.

### ○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액으로

자활근로사업수익 1억 2,700만원, 공금예금이자수입 550만원과

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50만원으로

총 1억 3,800만원이며,

지출내역은

자활사업 민간 융자금 1억 2천만원,

자활사업 보조비 6,200만원

총 1억 8,200만원입니다.

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5,024만 6천원임.

- 2021년도 자활기금사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 융자금 대여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, 실시기관 기능보강비 등에 대하여 운용방향을 수립하였으며,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본 기금의 용도 및 예산은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## 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[시행 2020. 6. 4.] [법률 제16734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 <개정 2019.1.15>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 <개정 2019.1.15>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
[전문개정 2012.2.1.]

## 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‘구’라 한다)의 교부금 및 출연금
2. 국고보조금
3.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
4.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5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
6.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7. 기금의 운용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
  - 나.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9. 자활사업 연구? 개발? 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11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
12.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